

■ 위험물철도운송규칙 [별표 6] <신설 2024. 4. 19.>

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, 교육시간 및 방법(제27조제2항 관련)

1. 내용 및 교육시간

과목	교육 내용	교육 시간
가. 위험물취급 제도	· 위험물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	8시간
나. 위험물의 분류	· 위험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	
다. 위험물취급 일반	· 위험물 용기 및 포장의 요건 · 위험물 용기 및 포장의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사항 ·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위탁 절차 · 위험물 표시 및 표찰 · 위험물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	
라. 위험물취급 실무	· 위험물 적재 및 격리 · 위험물 포장·운송	
마. 사고 예방 및 대처	· 위험물 사고 시 안전조치 방법 · 화재예방조치 등 위험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	

2. 방법

교육 내용에 따라 집합교육, 이러닝교육,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